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2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482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6. 5. 선고 2015구합53114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3. 24.
판 결 선 고	2016. 4. 7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12. 10. 원고에게 한 취득세 5,700,450원(가산세 포함), 지방교육세 346,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26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,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<고치는 부분>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"3) 그러나 한편," 부분을 삭제하고, 제2행의 "제19호증" 부분을 "갑 제19호증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"위 아파트의 제세공과금 일체를 지급해 왔으며," 부분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"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" 이하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【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비록 구 D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, 구 D아파트는 B와 그 자녀들이 독신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사망하면 B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이었고, 이 사건 아파트는 구 D아파트가 재건축된 것으로서 동일한 조건에 따라 B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인데, B와 그 자녀들이 원고와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고 B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쌍방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26

이 서로 양보하여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/2 공유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(일종의 화해)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.

한편,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어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3두4362판결 참조),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지분의 취득은 무상취득이라 볼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지분의 취득이 무상취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.】

2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형식

판사 김복형

판사 남양우